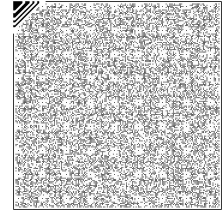


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국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」 (식약처 고시) 일부개정 알림

1. 원료의약품 등록 시 자료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여 등록하고 완제의약품의 품목 검토 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연계하여 심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」 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을 ‘21.2.15자로 개정·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유관 단체 및 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, 동 개정 고시는 우리 처 대표누리집(<http://www.mfds.go.kr>> 법령·자료 > 제·개정고시 등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「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1부. 끝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본부(53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1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장(54개 전부서),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, 한국약품수출입협회장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,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한국병원약사회장, 한국약품유통협회장

주무관 **주진영**      기술서기관 **김영주**      의약품정책과장 **채규한**      전결 2021.2.15.

협조자

시행 의약품정책과-1320      (2021. 2. 15.)      접수

우 28159    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의약품정책과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

전화번호 043-719-2607      팩스번호 043-719-2606      / [yuriz82@korea.kr](mailto:yuriz82@korea.kr)      /      대국민 공개